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9일(금)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7)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5)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8)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5)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2)
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7)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상정된 안건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4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7) 4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5) 4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8) 4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5) 4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2)	4
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7)	14

(11시08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잠시만요.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청문회도 공개하는데 그냥 다 공개하시지 그러세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분만 하실 거예요?

○**나경원 위원** 저희 1명씩 다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 다 하시지요, 하실 거면.

곽규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1소위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는 있다가 갑자기 또 제외가 됐어요. 1소위에 올라오는 안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간사 선임에 대해서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대상이라고 주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일사부재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처럼 제출이나 발의가 필요한 의안인 것이지 그렇게 호선으로 하게 되는 간사 선임에 대해서 일사부재의가 적용될 아무런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쇼하듯이 표결하는 모양까지 갖춰 가지고 부결을 시킨 것도 참 모양이 사납지만 또 그것을 하자마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들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간사 선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법사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용민 소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하고 빨리 상의하셔 가지고 이건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간사 선임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협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도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저도……

○나경원 위원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 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오늘 논의할 게 좀 있으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방식으로 하실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법사위에서 발언권이 너무 제한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1소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별로 제한을 안 하셔서, 조금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지난번에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불가피한 당 내 사정으로, 당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 광경을 봤는데 저는 우리 법사위에 갑자기 투표소가 차려지고 부스 안에서 투표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현정사상 있는 일인가? 그런데 결론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부결되었는데 그 모습이 참 기괴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하면 100%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존중을 해 주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무너졌고.

그래서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특히 일정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자꾸 일정을 정해서 통보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국회의원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간사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소위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1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위원님을 1소위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정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당도 당 내에서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듯이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여태까지 그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박준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내 사정으로 다른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1소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여기에 출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2소위에 대해서, 2소위는 거의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위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법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과거에 운영해 왔던 방식도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짧게 답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신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 주

신 게 오늘 소위의 의사진행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회의 때 말씀 주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조배숙 위원 하도 발언 기회를 안 주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 주신 그 취지를 또 한번 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사 선임 문제는 여야가 서로 이견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원내와 또 한번 상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로서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7)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5)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8)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5)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2)

(11시16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 개정안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 추가에 관한 김남희 의원안,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소병훈·조인철 의원안, 잠정조치의 이행실태 조사하는 조인철 의원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소병훈·김남희 의원안 그리고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병훈·조배숙·김도읍·조인철·손명수·김남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상대방,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는데 김남희 의원안에서는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사이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이런 행위에 추가해서 주거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학대, 살해 또는 그 위협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친밀한 사람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형 추가에 관해서도 반려동물 등에 대한 학대·살인은 현행법상 제2조제1호 마목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잠정조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정조치라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라고 지금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잠정조치 중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밑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이러한 잠정조치는 기간이 현행법상 3개월인데 조인철 의원안에서는 이 3개월을 6개월로 상향하자는 내용이고 또 이러한 3개월의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법에서는 두 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모두에서 기간 연장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에 따르면,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은 잠정조치 기간 전체가 9개월이 상한이 됩니다.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 따르면 12개월, 조인철 의원안에 따르면 15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소송법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자는 조인철 의원안입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 집행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이렇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구할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소병훈·김남희 의원안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이렇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한 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관할입니다.

관할은 두 개정안 모두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사 입법례에서는 소관상 가정법원으로 되어 있지만 관할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절차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방식으로 두 안이 동일합니다. 다만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피해자가 신청을 할 때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에서 결정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그것을 통지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되고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행에 관해서는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두 개정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입니다.

두 안이 좀 다른데 소병훈 의원안을 먼저 보시면 일단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3개월로 하고 두 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희 의원안은 첫 번째 부과할 때 6개월로 기간이 좀 더 길고 또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만 합산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동일합니다.

28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 보시면 가정폭력처벌법하고 아동학대처벌법도 김남희 의원안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보호명령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연장 시 추가 기간을 규정한 후 연장 횟수에 상한을 둔 게 아니라 전체 기간의 합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은 3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것이다보니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그리고 앞에서 보신 기간 연장, 종류변경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 두 개정안이 모두 같습니다. 다만 소병훈 의원안은 29페이지 조문대비표 17조의7 2항 보시면 스토킹 행위자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임시보호명령제도는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의 임시보호명령제도로서 두 안의 내용이 동

일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스토킹행위자, 피해자가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각에 대해서는 피해자만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 또 불복 사유가 해당 결정의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한 부당, 이 내용은 두 개정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변안전조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면 검사가 피해자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청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개정안이 동일합니다. 다만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그러니까 내용은 소병훈 의원안이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시행령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는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신변안전조치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는 김남희 의원안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등에게 이러한 이행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에도 모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위한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두 개정안 모두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두 개정안 모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병훈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접근 금지라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가 효력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데 이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접근금지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자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해 달라고 청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마지막에는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긴급응급조치의 경우가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으면 같은 내용이니 이것을 실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효력상실하는 사유로 기간이 지났을 때와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가 있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조항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7페이지, 비밀누설 금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17조의3 1호는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

조치, 잠정조치 그다음에 범죄 수사·재판에 관한 업무에 관여했던 자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 사람도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진다라고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주고 이 규정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로 의원님들 안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현행 법 18조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흉기를 가지고 저지르면 5년 이하 5000만 원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조인철 의원안은 이걸 일괄적으로 5년 5000만 원, 7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피해자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가령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와加害者연령을 모두 고려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훈 의원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조배숙 의원님 안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의 범죄, 김도읍 의원안은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 19세 이상의 범죄 그다음에 손명수 의원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김남희 의원안은 19세 미만에 대해서 19세 이상의 범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연령만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피해자와 加害者연령을 모두 고려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은 55페이지입니다.

스토킹치사상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먼저 조배숙 의원님안은 스토킹범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 손명수 의원안은 스토킹범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먼저 상대방 범위 확대 부분은 ‘사적으로 친밀’ 또는 ‘밀접한 관계’ 등의 의미와 기준이 불분명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행위의 유형 추가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되는 내용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나 형법상 협박죄, 손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해서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잠정조치 기간 연장 관련해서 잠정조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잠정조치 유형에는 유치장 유치, 전자장

치 부착과 같이 신체의 자유 제한이 큰 유형도 포함되어 있어 최초 부과 기간을 3개월로 하는 소병훈 의원안이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도입되는 경우 그 효력유지 기간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 연장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잠정조치 이행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조인철 의원안의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이행실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잠정조치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 권한이 없는 사법부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하게 하고 법관이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 및 명령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관여가 배제될 수 있는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권한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들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연계하여 법원이 요청하는 별도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에 이미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고 성폭력처벌법도 이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유사 입법례와 체계 정합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스토킹 가중처벌 관련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범행 주체가 성인인지 여부,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고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치사상죄 신설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스토킹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사망에 대한 구성요건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 관련해서는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 등 관계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심사자료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상대방과 친밀한 사람을 추가한다거나 동물학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차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잠정조치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잠정조치 기간은 2023년 7월 달에 연장돼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잠정조치 이행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심리하기 위한 조사관제도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상과 관련해서는 이를 조사할 만한 조사관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법원공무원이 이행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적일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상에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가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두 사건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고,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물적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말씀드린 대로 가사조사관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할 만한 법원 조사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조사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도입되지 않기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일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보충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법원이 심사를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관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국선보조인제도 도입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한 쟁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스토킹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부차관님과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들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로 지금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또 기존 스토킹행위 중에서도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토킹행위의 객체인 상대방 규정 중에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내용이 불명확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두고 있

는 조항인데 이런 불명확한 정의를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는 것이,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을 말씀드린 김에 다른 것도 말씀드릴까요? 대상만?

○**소위원장 김용민** 일단 이것만 먼저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곽규택 위원** 그것까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의견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 차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데요. 일반적인 동물학대의 사례, 소위 동물학대 범행 동기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행위와는…… 범행 동기나 악성도가 사실 더 높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학대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특정 동물에게 가하는 행위라면 교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좀 더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게 더 중한 범죄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토킹 행위의 성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축적이 돼서 스토킹이 성립이 된다라는 범죄의 속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같은 동물학대 일회성 행위를 굳이 별도의 범죄로 처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가 쟁점이 몇 개 있어 보여서 시간상으로 쟁점을 다꼼꼼하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오늘 개략적인 의견을 말씀 주시고 개략적인 의견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곽규택 위원** 잠정조치 기간에 대해서도 너무 장기화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소병훈 의원안, 12개월을 상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 덧붙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은정 위원** 일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니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은 가능한데 이게 스토킹의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의 실무례를 반영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이고, 이것을 동물 학대법으로 하기보다는 스토킹의 유형으로 포함시켜서 일반적인 위화 효과, 일반 예방, 그러니까 이것이 스토킹이라는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밀한 사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건데 동거인이라든가 아니면 동성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족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족이나 친밀한 대상에 대해서 스토킹 가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여기 의견을 보니까 스토킹범죄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가 대부분이므로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다른 범죄하고 연결될 경우에는 추가된 범죄의 가중된 형에 따라서 처벌되니까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토킹범죄가…… 언제 시행된 거지요, 최초에 시행된 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21년 4월……

○**조배숙 위원** 21년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2021년 4월로 보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런 데 대한 통계가 있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통계자료는 한번 추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스토킹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범죄유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처벌하긴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묻지마살인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스토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대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인데 지금 인격적인 장애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건 결국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많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법무부에서 좀 고민할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사후관리가 있는데, 물론 법무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업무 부하가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가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법원에서는 혹시 전체 스토킹범죄에서 일반적으로 아주 경미한 범죄의 비율이나 이런 것 통계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에 대한 집착 등 이상동기 범죄의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제도 관련해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죄자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심층심리검사를 이번에 도입해서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안으로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부

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통계 같은 게 있어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셨는데 이상동기라고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지와 방금 말씀하신 증가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는 기준에는 재판 등 관련해서 정신적 질환이라든지 병이 있는 경우들을 감정유치 대상으로 하고 감정유치 대상자를 중심으로 판단해 본 경향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특정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개념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연구된 자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리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오늘 이것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현재 파악되는 자료들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덧붙일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갑자기 묻지마살인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중증도가 약한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건 이상이 없어요, 사회생활하는 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분들이 쉽 어하면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뭔가 단념하고 그런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자 하면 거기서 욕해 가지고 다니면서 스토킹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범죄도 저지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 소화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키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이 아마 점심 약속과 지역 일정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 진행을 조금 더 빨리해 보는 게 좋겠지요?

챙점들이 몇 가지 드러나긴 했으니 이 쟁점들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심도 있는 토의를 계속 이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은정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스토킹?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꼭 말씀하셔야 되는 쟁점인가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다음에.

○**소위원장 김용민** 예. 다음 것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11시49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소위원장 김용민 이것 진행하고 나서……

○곽규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보고만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적 조항 중 형사처벌을 시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정안 내용에는 형사처벌 시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시정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12·3 비상계엄’, ‘제보자등’, ‘부당 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 등 네 가지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제보자등’, ‘부당 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는 용어 사용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 인사’는 안 제29조 각호를 통하여 부당 인사의 대상을 다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개별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 대상사건 관련입니다.

안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각호의 사건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특별형사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에 의한 수사대상사건 재판이 특별재판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대상사건을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사건으로 하는 방안 또는 제정안의 대상사건에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사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관의 제척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인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안 제2호의 제척사유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8명의 대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대상사건 상고심에서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안 제5조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 제목을 ‘다른 법률의 준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1명 이상의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제2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고, 해당 법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재판의 이관 관련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재판부로 재판을 이관하고, 이 경우 공판개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공판개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판개신절차 중 어떠한 부분을 간이하게 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을 전속관할인 특별재판부로 옮기는 내용이므로 ‘재판의 이관’이 아닌 ‘사건의 이송’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논증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재판과정 녹음·녹화·촬영 허가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고 대상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되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59조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제1심의 경우 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판기간, 사건의 대국민보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1심은 공소제 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제1심 재판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 이외에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므로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회는 제1심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통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특별영장전담법관후보자 및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위한 추천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위한 추천위원

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특별영장전담법관후보자 추천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나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며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사면 및 감형의 제한입니다.

안 제25조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또는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특별사면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 견해와 반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작량감경의 배제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26조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또는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6조는 동 내용을 '제6절 판결 이후의 형사상 특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작량감경은 유죄 확정판결 당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절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제보자등의 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27조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신고·진정·제보 등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보자 등이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 협력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제보자 보호조치를 통하여 자발적 신고 및 협조를 유도하고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비밀보장, 신변 보장, 형 감면 조치 등 더욱 세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자수를 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부당 인사행위 시정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29조는 계엄 또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의 방해, 증거의 인멸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4년 12월 15일부터 임명된 임기제공무원, 모든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기간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의 재직기간 만료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1급 공무원과 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9조 제1항 2호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장 등의 경우도 개별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의 신분보장 또는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와 이들 규정 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의 인사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15일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시점이므로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인사 조치’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 기타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책무, 기념사업의 실시 등입니다.

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하여 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현 정질서를 수호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2조는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행위 시 소속했던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직접적인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이 소멸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32조는 정당에 소속하거나 소속하였던 자의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당법에 따른 정당 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의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 경과조치, 우선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효력과 관련하여 우선효력을 규정하는 부칙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본칙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함이 법제적 측면에서는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용민 기관 의견을 듣고 말씀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 기관 의견 전에 조금 말씀……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려는 것과 같은 건가요?

○곽규택 위원 들어 보고.

○소위원장 김용민 한 분만 하시고 기관 의견 듣고 또 말씀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일단 이것 간단히 얘기하면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48시간 전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오후에 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좀 맞춰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우리는 요새 그냥 통지하면, 오라고 그러면 오고 하는데 이것 다 국회법 위반인데 일단 저희는 회의에 안 가면 일방적으로 진행되니까 참석은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회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회의를 잡는 것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오는 것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매번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48시간 전에 와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엽발달적인 것 한두 개 얘기하고 전체적인 틀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민주당 위원님들 눈치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헌법과 법에 따른 보고서 좀 내주세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취지임’ 이러면서 나오는데 예컨대 특별재판부 재판관들 추천하는 것, 그러면서 기껏 쓴 것이 고등법원하고 중앙지방법원하고 2개가 되는지 어찌고 이런 거나 했는데요. 이것 위헌적인 부분 이런 것은 검토 안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이런 법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것에 정당성을 주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고 합니까?

검토보고를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하십시오. 이 검토보고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다 후대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관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론 중에 토론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보고 먼저 듣고……

○서영교 위원 잠깐,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신데요. 저도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이 법이 가장 중요하게 핫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여론조사해도 이 법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열심히 검토해서 왔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해 버리면 어디 검토하겠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곽규택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내용 맞잖아요.

○곽규택 위원 뭐가 맞아요, 내용이?

○서영교 위원 검토의견서에 법안이 다수 올라왔고 몇 개나 올라왔고 그리고 이런 게 검토된 적이 있고, 이건 원래 검토보고서 기본 아니에요? 어떤 어떤 법안이 왔고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지요.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는 이것도 수석전문위원에게 일정 정도 뭐랄까, 운신의 폭을 확 줄여 버리려고 하는 약간 압박, 나쁘게 말하면 나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수석전문위원이 무슨 눈치를 봅니까?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는 수석전문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아직 토론시간은 아니기는 한데 전문위원님들 정치적 중립의무 유지하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니 개별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얘기하시되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법부 독립 침해 등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쟁점사항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 논의 시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가장 핵심적인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관해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영장법관이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서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담당할 법관은 법률과 내부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특정한 사건을 심판할 특정 법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급 법원은 법관의 사무분담을 반드시 미리 확정·공지해 두고 사건배당은 그 사무분담에 따라서 사법행정권자의 임의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무작위 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 사법행정권자가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을 이런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여 임의적으로 배당하려다가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있었고 그 이후 사건배당 무작위 원칙은 더욱 엄격히 규정 준수돼 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함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일반적인 법률 및 사무분담 계획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이 신설되는 특별전담재판부로 이송되는 측면에 있어서

도 이는 재판 계속 중인 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함으로써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고 법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에 위반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밖의 법률의 위헌 논란으로 인해서 재판의 신속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고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공판 간섭 절차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구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나중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행정처장님,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어떤 판사가 가더라도 그 판사의 재판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하더라도 같은 혹은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결론 아닐까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 재판부가 변경이 되거나, 불공정성을 의심받는 재판부가 아니라 불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재판부로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누구에게 맡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논리와 충돌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쟁점이 크게 다섯 가지, 그러니까 쟁점이라기보다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재판부고, 두 번째가 사면·복권 제한, 세 번째가 부당인사에 대한 시정, 네 번째가 교육·기념사업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것, 이 다섯 가지인데요.

예상컨대 아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립이 없을 것 같은 것을 먼저 여쭤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복권 제한에 대해서는 혹시 야당도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곽규택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얘기 좀 하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개략적인 얘기만 한번 하고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 회의 때 진행할 테니,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다음 회의 때 진행할 테니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 법안의 처음 발단이 박찬대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앞두고 막 만든 법

이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는 않아요.

○곽규택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상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석전문위원이 열심히 해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법안을 별도로 내신다면서요?

○소위원장 김용민 내셨지요, 이미.

○장경태 위원 어제 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하기에는……

○장경태 위원 그래도 어떤 점들을 반대하시는지 궁금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긴 한데……

○곽규택 위원 아니, 사실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재판부는 지금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다 공통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이런 우려는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지금 다른 조항들보다도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조항이 사실 굉장히 큰 조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하신 별도의 법안이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같이 그때 논의하는 게 맞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오늘 소위를 저녁까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쟁점이 많아 가지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 다 끝났습니까?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예를 들면 사면·복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고.

교육·기념사업, 민주주의 교육과 기념사업을 하자라는 것도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곽규택 위원 개별법에다가 이런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절을 넣는다는지 또 양형에 관련해 가지고도 제한사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참 너무너무 기존 법체계하고는 안 맞는 거여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다 문제점을 하나씩 토론하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번에 하고,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념사업 부분도 이 법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런 반대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교육·기념사업을 주로 하는 법이라면…… 사실 제목이나 법의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지요. 그것은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실 법안 이름하고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반대 입장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당연히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도……

○**곽규택 위원**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개략적인……

나경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위헌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나경원 위원** 법원의 배당권, 사법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침해하는 법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반대하고 해도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니까……

위헌법률심판 신청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개별 사건이 진행됐었을 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원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법원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헌성 여부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면.

○**나경원 위원** 두 번째, 서영교 위원님이 앞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서영교·부승찬 의원님이 상당히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면책특권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명백히 허위인 줄 알았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린공감 TV’ 거기에서 나온 걸 보면 믿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서영교·부승찬 의원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법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소위 주제에 맞는 토론을 좀 이어 가시지요.

○**곽규택 위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소위에서 주제 제한이 어디 있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이거 지금 다 관련된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법안 심사하는데 고발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법안 심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의견만 제시하시면 되지요.

○**나경원 위원**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서영교 위원**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군요. 제가 다 받아쳐 드리지요. 짹 다 받아쳐 드리지요.

○**곽규택 위원** 쳐 보세요.

○나경원 위원 제 발언 중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관계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법원으로서는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발표한 정도 수준입니다.

○나경원 위원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적인 검토도 하는 것이 대한민국국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 빨리하라고 압박하고 판사 바꿔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란재판 관련해서? 그런데 법원이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냥 비위 맞추느라 바빠요. 재판을 빨리하기 위해서 판사를 한 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것을 자꾸 발표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소고기 촛불시위 사건 때 재판 빨리한 것으로 사법파동 난 것 아닙니까, 재판 빨리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법원이 자꾸 이런 것을 거기에 따라서 비위 맞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잘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원이 그동안 못했구나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니까 법원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헌법과 법에 따라서 그동안 했던 것대로,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에 따라 하는 원칙에 대해서 담담하게 하십시오, 담담하게.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민주당이 하도 압박하니까 요새 내란과 관련된, 우리와 비슷한 것과 관련된 것, 우리와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장이 모두 발부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은 그냥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차관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하면서 이게 재판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앞에? 이 법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법의 위헌성 여부는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저희는 호불호, 찬성·반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을 해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법이 나왔다고 무조건 공감한다 이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유죄판결이 나와도 오히려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검토도 꼭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나경원 위원도 그렇고 국힘도 잘 들어 두세요.

제가 5월 2일 날 질의를 합니다. 그때 법원행정처 차장께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하느냐하면, 5월 1일 날 3시에 조희대가 파기환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1년 전에 내가 들었어요.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은 대선후보 되는 일 없을 거야,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조희대가 그것은 알아서 다 처리하기로 했어’라고, ‘윤석열과 다 이야기하고 대법원장이 된

거야' 이런 제보가 있었다 그것을 5월 1일 날 파기환송되고 제가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했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파기환송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연히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답변 못 하시지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했습니까, 그다음에? 안 했습니다.

자, 저는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제보를 받아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다 까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곽규택 위원 까세요.

○나경원 위원 까세요.

○서영교 위원 그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바겠지만 두고 보세요. 윤석열과 조희대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다 날낱이 특검을 통해서 조사해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아니, 소통관 가서 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이와 똑같은 맥락 속에서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4인 회동 속에 조희대 왈, '이게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요? 그걸 제가 5월 14일 날 질의했어요. 답변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 절차를 통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근거가 있는 제보들입니다.

그러니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의 차량기록, 일지 등등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의혹을, 그때 제가 의혹이라며 제기 했고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든 근거가 있는 의혹이고 제보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특검에서 부르면 나가서 진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3월 26일 날 무죄가 납니다.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가지고 대통령후보를 날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무죄가 납니다. 그 내용은 1심부터 무죄가 나고요. 핵심이었던 그 내용은 1심부터 무죄가 납니다. 그다음도 무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에서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대법원 2부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건 제가.....

○서영교 위원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지요, 2부에? 박영재 주심, 오경미 대법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2부에 배당되고 전원합의체로 1시간 만에 회부합니다. 그런 적이 역사상 있습니까? 대법원 2부에 배당됐어요. 그걸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1시간 만에 회부합니다. 이런 적이 역사상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금 녹취합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보좌진입니다.

○서영교 위원 누군데 내가 하는 걸 녹취하는 거예요? 누구 보좌진이에요!

- 나경원 위원 우리 방 보좌관인데 왜, 뭘……
- 서영교 위원 그 보좌관이 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녹취해요?
- 소위원장 김용민 삭제하세요, 지금.
-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나가서 삭제하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아니, 어차피 속기록에 다 되는데……
- 조배숙 위원 어차피 속기록 통해서……
-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속기록은 속기록인데……
- 서영교 위원 아니, 속기록 통해서 나오는 것하고……
나경원 위원, 보좌진이 이렇게 녹취하는 게 맞아요?
- 소위원장 김용민 행정실은 삭제하는 것 지금 확인하세요.
- 박규택 위원 녹취가 아니라 영상 촬영입니다.
- 서영교 위원 영상 촬영하는 게 맞아요?
-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나가서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삭제하시는 걸 우리 행정실이 확인할 수 있게 좀……
- 서영교 위원 제가 확인하고……
-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가 보도 이런 것들 다 지금 불허했는데 그렇게 영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위원 어디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아니, 지금 지우려고……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보좌진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나경원 위원 말씀하세요.
- 서영교 위원 뭘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김용민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성윤 위원 안 되지요.
- 서영교 위원 지금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 곽규택 위원 아니, 뒤에 있는 보좌진이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조직문화인가 봐요.
- 서영교 위원 내가 제기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해야지, 뒤에서 한 걸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 곽규택 위원 그것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맞냐고요. 그러면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요.
- 박은정 위원 보좌진이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지요.
- 이성윤 위원 연대책임이라는 거지요. 지휘·감독 책임.
- 곽규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서영교 위원 아니, 나경원 위원, 지금 이게 말이 돼요?
- 나경원 위원 제가 유감을 표시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 서영교 위원 ‘유감을 표시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이게 유감이에요?
- 나경원 위원 유감을 표시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하시면 내가 얘기할게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서영교 위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경원 위원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삭제했어요, 영상?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예, 삭제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왜 오다니?

○소위원장 김용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회법 140조의2……

○곽규택 위원 왜 오기는 왜 온 거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 간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어디다 소리를 질러!

○소위원장 김용민 좀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 좀 들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 이런 국회가 있었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소위원장 김용민 좀 들어 보십시오.

○서영교 위원 보좌진이 지금 영상을 그렇게 촬영하는 게 맞습니까! 보좌진 이름이 뭐예요?

○이성윤 위원 왜 찍어요?

○나경원 위원 지금 내가 서영교 위원한테 ‘나경원 위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곽규택 위원 왜 왔느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경원 위원 아니, 내가 서영교 위원보다 국회도 선배인데 ‘나경원 위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또 선배 얘기합니까?

○이성윤 위원 또 선배 나오네.

○곽규택 위원 선배 맞잖아요.

○이성윤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 사과하시라고요.

○서영교 위원 이 상황이면 바로 그렇게 하셔야지……

○나경원 위원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진행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소위니까……

○이성윤 위원 그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 위원 그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잘못했을 때는 확실하게 정리해야지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질의 끝나면 얘기한다고 하는데 ‘나경원 위원’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내가 서영교 위원 후배 위원입니까? 서영교 위원님 후배입니까?

○서영교 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서영교의 발언을 놓고 다 했지요, 조작이라고? 뭐가 조작이에요? 조작인지 확인했어요?

○나경원 위원 우리는 조작이라고, 조작된 증거에 의한 발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좀 그만하시지요. 나경원 위원님도 발언권 아직 없으신다……

○서영교 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발언이 조작이에요?

○나경원 위원 조작된 증거를 들고 혼들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상호 간 토론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질의를 하시고.
제가 잠깐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국회법 149조의2에 중계방송, 녹음·녹화·촬영 이런 것들은 위원장이 허용을 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위원님의 보좌진이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이 국회법 지키자라고 먼저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경원 위원님의 보좌진이 국회법을 어겼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좀 하시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당사자가 사과 말씀 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 끝나면 내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영교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바로 정면에서 너무 뻔뻔스럽게 나를 대고 찍는데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죄송합니다.

○**나경원 위원** 몰랐으니까 했겠지. 이따가 끝나고 얘기할 테니까 하세요.

○**서영교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앞에 있는데 바로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죄송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너 물 먹어라’ 이러고 탁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나경원의원보좌관 김광인**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보좌진도 그만하시고.

위원님, 토론 마저 진행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우선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4월 22일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이 있는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갈 때 얼마 만에 갑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얼마 만에 갑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2부에 배당됐는데 약 1시간, 아니면 오전에 배당됐는데 오후에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례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처음 있는 일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기록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법원 너무 존중합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2부에 배당됐는데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기환송 반대입니다. 잘 들어 두세요. 오경미 대법관이 파기환송 반대할 것 같으니까 오경미 대법관이 배당된 2부의 내용을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하는 게 이게 법원의 독립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께도 물어볼게요. 이게 법원의 독립 맞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법원의 독립 맞습니까?

○**이성윤 위원** 무작위 배당도 아니고.

○**서영교 위원** 배당된 것을, 제가 듣기로는 1시간 만이라고 그래요. 전원합의체로 돌려요. 전원합의체로 1시간 만에 돌렸어요, 22일 날. 그리고 표결을 24일 날 합니다. 그게 24일 날 표결이 가능합니까? 24일 날 대법관들이 표결하셨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심의 절차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 온 세상에 나와 있어요. 알고 오셔야지요. 24일 날 표결했어요. 표결했습니다, 24일 날. 그런데 표결할 때 찬성…… 반대 오경미·이홍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 파기환송을 반대할 걸 뼈剔 아니까 2부에 배당된 것을 전원합의체로 하고 그것을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자, 22일 날 오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어요. 24일 날 표결해요. 표결하면…… 만 하루지요? 만 하루 동안 6만 페이지 볼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때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 기록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나와서 전산 기록으로 봤다 그랬어요. 6만 페이지 전산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판사님들, 볼 수 있어요? 오늘 낱낱이 제가 정리합니다. 그 6만 페이지를……

그래서 우리가, 박은정 위원과 위원들이 전산 기록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산 기록, 로그인 기록 가져오셨습니까? 6만 페이지 프린트로 봤다고 했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전산 기록으로 봤다 그래서 전산 기록으로 봤으면 로그인 기록 달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은정 위원**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서영교 위원**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대법관들이 그것 보셨습니까? 보지 않고 이를 만에 표결해서 끝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선고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것은요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에 한덕수가 언론에다가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를 겁니다. 한덕수는 뭘 믿고 엠바고를 걸지요? 그 당시에 파기환송이 아니라 다 무죄 나올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왜? 여기저기서 그렇게 훌리고 다니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훌리고 다니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파기환송이 나오는데 4월 30일에 한덕수가 엠바고를 겁니다, 출마한다고. 5월 1일 날 3시에 파기환송 납니다.

○**조배숙 위원** 저도 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5월 1일 날 4시에 한덕수가 사직하고 출마 기자회견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 흐름을 한덕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파기환송되는 걸? 한덕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5월 1일로부터 1년 전 즈음에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한덕수는 이재명 건 올라오면 바로 처리해’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고 그것을 저에게 제보했어요. 그걸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 충분히 의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의심 안 가요. 아니, 10분 정도를 이렇게 혼자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안건하고 관련도 없는 내용을?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안건 관련 없는 얘기를.

○**곽규택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조배숙 위원** 모범, 모범. 이제 정리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잘 들었지요, 곽규택 위원?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발언 중에 가능한 한 끼어들지 마시고……

○**곽규택 위원** 회의 속기록에 다 나오잖아요.

○**서영교 위원** 잘 들었지요?

○**곽규택 위원** 들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곽규택 위원님도 끼어들지 마시고.

서영교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곽규택 위원** 나보고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먼저 끼어들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한덕수는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물어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있는데 한덕수를 집어넣어서 후보로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날려 버려요. 이 과정 속에서 뭘 믿고 이렇게 하지요?

○**곽규택 위원** 국민의힘에다가 뭘 물어요, 지금 소위 하고 있는데.

○**조배숙 위원** 그건 좀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 지금 본인 고발된다 하니까 쫄았으면.

○**이성윤 위원**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좀 들어 보십시오.

○**서영교 위원** 조희대와 한덕수와 윤석열과 권영세와 권성동과 국민의힘은 무슨 관계가 있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건 너무 나가신 거고.

○**곽규택 위원** 지금 고발된다고 하니까 조사받을까 봐 두려우셨네.

○**서영교 위원** 들어오세요. 고발 들어오세요.

○**조배숙 위원**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세요.

○**서영교 위원** 내가, 우리가 이런 내용 짹 다 할 테니까.

○**곽규택 위원** 왜 이렇게 혼자서만 발언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정리하세요.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국민의힘이 조희대 측과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짹 다 밝혀 봅시다.

○**곽규택 위원** 밝혀 보세요.

○**나경원 위원** 밝혀 보세요. 다 밝혀요. 민주당 같은 줄 알아.

○**서영교 위원** 예, 들어오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서로 책임을 해야 되니까……

○**서영교 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전부 다 이쪽에서도 법적조치 다 하고 고발되어 있습

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끼어드시면 더 길어지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님, 가능한 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저희가 쟁점 다섯 가지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담재판부 쟁점으로 갈게요, 내란전담재판부.

○**나경원 위원** 밥 먹으려 가야 돼요, 지금.

○**서영교 위원** 이 부분은 저희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귀연을 지키고 있어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식전담재판부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우리는 해사전담재판부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전담재판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담재판부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것 법률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법원 안에서 만들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 내부적으로 만들었지요.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것은 헌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률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률에 있지요?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헌법에는 사법권은 대법원에 둔다, 법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법관은 무엇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죄송한데요 서영교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인 토론은 오늘 하지 않기로 했고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만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은 다음 저희 심의 때 구체적으로 토론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것은 다음 회의 때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아까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위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의 위헌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법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관의 판단으로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식전담재판부, 해양사건전담재판부 다 있지요?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서영교 위원님 혼자 소위 다 하세요?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10분 지났어요, 발언이.

○**서영교 위원** 예, 정리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지금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예, 여기서 마지막 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관의 구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헌법에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법관의 자격,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관의 구체적인 자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서 그 법관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 법률로 만드는 겁니다. 헌법을 잘 보시고요. 헌법은 거기서 법률로 다 이관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해 두면서, 저는 어쨌든 내란자의 사면권 없애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번에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요.

○서영교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 토론은 다음번에 더 이어 가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회의에서는 심사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되는데 나경원 위원님, 아까 사과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우리 보좌진이 국회법에 위반해서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사 선임 같은 것은 국회 관행이 있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소 설치해 갖고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것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께서도 흥분하시고 한 것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예의를 지킵시다.

○서영교 위원 사과는 사과만 하세요.

○나경원 위원 그래도 우리가 국회라는 것이 선후배 의원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다 국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